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225

발의연월일: 2025. 2. 17.

발 의 자:조정훈·김민전·정성국

조경태 · 김상훈 · 김대식

김용태 · 최수진 · 이인선

서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교원을 교육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상담 및 치료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이에 기존 운영되던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교원에대해 휴직과 복직, 계속 근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및 직무 배제 절차 신설(안 제44조의2).
 - 1) 현직 교육공무원이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사유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첨부하여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함.
 - 2) 임용권자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을 직위해제 외에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의 판단으로 긴급하게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경우 학교장이 우선 조치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 나.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 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4조의3).
 - 1)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심의사항 및 결정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는 운영 기반 마련.
 - 2) 질병휴직 사유 중 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한 교원을 복직시킬 때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 의무화.
 - 3)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 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의료기 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확인서를 첨부하게 해 그 신뢰도 를 제고.

4)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에 회부되는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

법률 제 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자

다만, 임용권자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유 소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44조의3에 따른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에 자문 해야 한다.

- ⑥ 학교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긴급하게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이 우선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
- ⑦ 임용권자는 제6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안조사 등 필요 한 조치를 위해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된 긴급대응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직무에서 배제되는 교원은 잔여 병가와 연가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서 배제된다.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4조의3(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①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객 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교원직무 수행적합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육계 전문가, 관련 공무원, 학부모 등으로구성하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면직 여부
 - 2. 제44조제1항제1호로 휴직한 사람의 복직 여부(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 3. 제44조의2제1항제5호로 의심되어 임용권자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4. 제44조의2제2항 단서조항에 관한 사항
 - 5. 제44조의2제6항에 해당되는 사람의 복귀 여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대한 심의 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심의대 상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대한 심의 시 심의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심의대상자가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진술 없이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직무수행에 문제없음, 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상담 또는 심리치료 후 재심의, 직권휴직, 직권면직 심의 회부 중 하나로 결정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 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상담 또는 심리치료 후 재심의, 직권휴직 중 하나로 결정되는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교원의 의견을 들어 자발적으로 치료 또는 요양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⑨ 제44조의2제6항에 관한 사항을 긴급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 회를 둘 수 있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아 혂 개 정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 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 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 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서 ----. 다만, 임 용권자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 신설> 는 사람의 사유 소멸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 제44조의3에 따른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 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학교의 장은 제1항제5호에 <신 설>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에서 배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 설>

<신 설>

<신 설>

학교장이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긴급하게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이 우선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① 임용권자는 제6항에 따른 조 치가 필요한 경우 사안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의료전문 가,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된 긴 급대응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직무에서 배제되는 교원은 잔여 병가와 연가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서 배제된다.

제44조의3(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①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지장이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역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 되,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교 육계 전문가, 관련 공무원, 학부 모 등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 항제4호에 따른 직권면직 여 보
- 2. 제44조제1항제1호로 휴직한
 사람의 복직 여부(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한 경우로 한정한
 다)
- 3. 제44조의2제1항제5호로 의심되어 임용권자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4. 제44조의2제2항 단서조항에 관한 사항
- 5. 제44조의2제6항에 해당되는사람의 복귀 여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위원회 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① 위원회는 제3항에 대한 심의 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의료기 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의 의학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 를 심의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대한 심의시 심의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심의대상자가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진술 없이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직무수행에 문제없음, 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상담 또는 심리치료 후 재심의, 직권휴직, 직권면 직심의 회부 중 하나로 결정한다.
- ①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 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상담 또는 심리치료 후 재심의, 직권휴 직중하나로 결정되는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의견을들어 자발적으로 치료 또는 요

 양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야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⑨ 제44조의2제6항에 관한 사항을 긴급하게 심의하기 위하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 하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